

	<b>행정지원처운영위원회규정</b>	규정번호	3-8-41
		제정일자	2023.09.01
		개정일자	-
		개정차수	-
		소관부서	행정지원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 행정지원처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 할 수 있다.

1. 행정지원처 운영 계획 및 예산 수립에 관한 사항
2. 행정지원처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
3. 직원인사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
4.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5. 행정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6. 재무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7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은 교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행정지원처장으로 한다.

③ 위원장은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총장이 위촉한다. 필요에 따라 임시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직원 1인을 간사로 둔다.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5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③ 위촉위원의 교체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서기) 위원회 간사를 서기로 한다.

제8조(조사, 연구의 의뢰) 위원회의 업무 수행상 필요할 때에는 임시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내외 기관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제9조(비밀유지) 위원회 업무에 관계한 교직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
제10조(소요경비)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연구비, 수당, 기타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준용)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관계되는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23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